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52525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6. 4. 21.

판결 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345,795원 및 그 중 430,345,577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11. 25.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1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9.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 B]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C]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1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9.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2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위 예비적 청구는 '전부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전부 취소와 가액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99다206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와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참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6. 24. 신용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6. 24.부터 2014. 6. 24.까지(이후 2015. 6. 19.까지로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6. 25.경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이 위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5. 1. 14.경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14. 12. 26. 이자연체 및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 2015. 4. 7.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431,009,616원(원금 425,000,000원 + 이자 6,009,61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는 2015. 4. 7. 664,039원을 회수하여 이를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으며, 일부 회수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18원($664,039 \times 12\% \times 1/365$,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피고 B는 2007. 4. 3. D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 지상 건물 중 2층(방 2개, 거실, 욕실 1개)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07. 4. 2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 되어왔다. 피고 B는 2014. 9. 20.경처인 피고 C에게 D에 대한 위 채권 중 별지 1 채권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D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피고 C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피고 C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4. 9. 2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의 재산상태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5,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아래와 같은 소극재산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1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	425,000,000원 ¹⁾
2	롯데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	7,301,000원
3	우리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83,000,000원
4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채무	12,220,000원
합계		527,52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30,345,795원(431,009,616원 - 664,039원 + 218원) 및 그

중430,345,577원(431,009,616 - 664,03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11. 25.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14. 9. 20.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연대보증약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피고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일로부터 3달이 지난 2014. 12.26.경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B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 그 당시 피고 B의 재정상황 등 여러상황을 합쳐 고려하면, 피고 C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반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임대인 D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임대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 C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박현숙, 판사 정희철

1) 원금만 산정